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5. 05. .
발 의 자	윤종호 의원 외 10명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윤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5. .

발 의 자 : 윤종호, 김상조, 김인배, 김재상,
김정곤, 박교상, 안장환, 윤영철,
임춘구, 정근수, 한성희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안 제1조), 공공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설정(안 제6조)
- 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안 제7조)
- 사.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자.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 나. 예산관련 : 해당 없음
- 다. 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라. 기 타 : 의원발의조례안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 및 공사·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